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11.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0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10월 3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9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3.10.31) 보류
제10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3.11.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

가. 제안이유

-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 영역도 종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 관광, 교통분야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예방, 기초질서제도, 재해구호, 문화, 체육진흥 등에 관한 봉사활동
 -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등
- 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기능
-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6조)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시민운동 단체 등에 운영을 대행(안 제9조)
- 포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규정(안 제10조 ~ 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서울시 월기13290-52(2000. 1.24)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그동안 각종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기준 등이 없어 운영해 오던 것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며 특히,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보험가입 포상 등의 예산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6조 4항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 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출년월일 : 2003. 10. 2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종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 관광, 교통분야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예방, 기초질서제도, 재해구호, 문화, 체육진흥 등에 관한 봉사활동
 -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등
- 나. 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기능
- 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6조)
- 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 마.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시민운동단체 등에 운영을 대행(안 제9조)
- 바. 포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규정(안 제10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시 월기13290-52(2000. 1.24)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 : 2003. 8. 7 ~ 8. 26 (의견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 나. 사회복지 및 주민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 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라.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마.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바.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사.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아.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 자.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차.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카.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 수요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기능) 지역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4. 자원봉사 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5. 재난·의료분야 등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6.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조직 및 구성) ①센터에는 사무소를 둔다.

②센터에는 팀장 또는 소장 1인 및 운영요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운영 등) 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에 대한 경비 지원방안 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등록된 후 2년 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제8조(자문회의 운영)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 ②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의 대행) ①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키는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 및 기타 대행에 관한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0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

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우대 등)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자에 대하여 구 주관 각종 강좌 또는 문화행사 등에 수강료를 감면하거나 초청 등 우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해 자원봉사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11.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11월 17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00회(임사회) 제1차 위원회(2003.10.3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

- 가. 개정이유
 - 전자이미지의 등록 및 관리에 따른 명확한 근거와 폐기공인의 이관 및 보존의무화 명시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 근거명시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구보공고 의무화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
- 나. 주요골자
 -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른 조항 신설(제8조의2 신설)
 -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제2호의2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문서과가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가 관리
 -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